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4. 11. .

발 의 자 : 정청래 의원

찬 성 자 : 인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,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·조사, 성적 평가, 입학자 선발, 채용 등의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감사·조사 업무, 성적 평가, 입학자 선발, 채용 등의 업무는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기에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 제한은 타당성이 있으나, 최소침해의 원칙 상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. 하지만 현행법은 열람권의 제한 요건을 한정하지 않아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.

한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이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,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용이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감사·조사와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라도 정보주체가 요

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의2 신설)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”을 “해당”으로, “요구할”을 “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열람을”을 “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

2.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

다만 제3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한정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개인정보 처리내역의 통지)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, 제18조제2항, 제23조 단서 및 제24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내역(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 및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을 포함한다)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

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역, 통지 주기, 방법, 그 밖에 처리 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 ① 정보 주체는 <u>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<u>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.</u>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 ① -----<u>해당</u>----- ---<u>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</u>-----.</p> <p>1. <u>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</u></p> <p>2. <u>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을</u>----- ----. <u>다만 제3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한정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8조의2(개인정보 처리내역의 통지)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</u></p>

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, 제18조제2항, 제23조 단서 및 제24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내역(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 및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을 포함한다)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역, 통지 주기, 방법, 그 밖에 처리 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